

여러분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임금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 임금 차별은 고용주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장애 여부, 연령 또는 유전적 정보에 따라 차등적인 급여를 지급할 때 발생합니다.

임금 차별은 불법일까요?

- **그렇습니다!** 1964년 제정 시민권법 제7조(Title VII)는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에 따라 급여 차별을 포함한 직업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입니다. 4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의 고용주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업무에 대해 남성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비아프리카계 미국인 직원에게 불평등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리노이 임금 평등법에 따라 임금 차별은 불법입니다. 단, 그러한 차이가 연공서열제, 실적제, 생산 제품의 품질과 수량, 성별이나 인종이 아닌 기준 등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에 근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같은 일을 하는데도 타 인종에 비해 특정 인종에 속한 직원에게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귀하가 공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미국노동부는 각 주에서 보장하는 귀하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평하고 투명한 급여 지급에 대한 연방법에 의거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ol.gov/agencies/wb/equal-pay-protections](https://www.dol.gov/agencies/wb/equal-pay-protections) 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노동부(이하 IDOL)도 다음 웹사이트에서 일리노이에서 보장하는 귀하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ttps://labor.illinois.gov/faqs/equal-pay-faq.html>
- 일리노이는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종업원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종업원의 급여와 관련된 **특정 익명 데이터**를 IDOL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일리노이 임금 평등법에 추가했습니다.
- **만약 본인의 급여에 대해 동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귀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법 및 연방법을 기준으로 일리노이주법 및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 수당 또는 기타 보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급여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귀하가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1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은 채용 공고에 모든 직위의 급여 범위와 예상 복지 혜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현재 또는 과거의 급여에 관해 질문할 수 있을까요?

- **일리노이에서는 안 됩니다.** 일리노이 임금 평등법(Illinois Equal Pay Act)의 개정법인**급여 이력 공개 금지법(No Salary History Law)**에 따라, 일리노이의 고용주는 귀하의 구직 또는 면접 과정에서 귀하나 귀하의 현재 또는 과거 고용주에게 과거의 급여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리노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 다음 웹사이트의 목록에서 귀하의 거주지에 유사한 법 규정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auw.org/resources/policy/state-and-local-salary-history-bans/](https://www.aauw.org/resources/policy/state-and-local-salary-history-bans/)



여러분은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확인하세요

공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일리노이노동부는 일리노이 임금 평등법을 집행합니다. 귀하의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1-866-372-4365로 연락하거나 <https://labor.illinois.gov/complaints.html>에서 온라인으로 불만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1964년 제정 시민권법을 집행하는 **공정고용기회위원회(약칭 EEOC)**로 연락해도 됩니다. 가까운 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eeoc.gov/field를 방문하거나 1-800-669-4000로 문의하세요. 문자 전화(TTY) 번호는 1-800-669-6820입니다.
- 두 기관은 **신고 기간 제한**을 적용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불만 사항을 신고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급여 제안서, 급여 명세서 및 기타 급여 관련 정보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2

귀하의 업무 수행 기록을 보관하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직업 평가, 이메일, 서신 등 귀하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인쇄하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세요. 불공정한 대우는 특히 혼자 감당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가 크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권리에 관한 상세 정보는 equalpayillinoi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먼 임플로이드(Women Employed)가 일리노이 FARE 보조금 프로그램(Illinois FARE Grant)의 하나로 일리노이노동부, 어라이즈 시카고(Arise Chicago), 만트라콘 코퍼레이션(Man-Tra-Con Corporation), 슈라이버 빈곤법 센터(Shriver Center on Poverty Law) 및 YWCA 쿼드 시티(YWCA Quad Cities)와 협력하여 작성했습니다. 우먼 임플로이드는 특히 저소득 유색 인종 여성 근로자의 임금 평등 및 임금 투명성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단체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노동부 여성국에서 지급하는 접근권 및 형평성 보조금(Fostering Access Rights and Equity, 약칭 FARE) No. WB 36961-21-60-A-17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간행물에 게시된 의견, 사실, 결론 및 권고는 저자의 의견, 결과, 결론 및 권고이며 미국노동부 여성국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